

의안번호	제 538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7년 1월 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3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7년 1월 6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환경분쟁조정법」 제7조에 따라 위원의 구성원수 동일하게 수정 및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
-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우리 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게 조정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2조)
 - 환경분쟁조정법과 동일하게 조정(15명→20명)
-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)
 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“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, 부위원장은 “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”으로 개정
- 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삭제(안 제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5명 이내”를 “20명 이내”로, “행정부지사”를 “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, “바이오환경국장”을 “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15명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, 부위원장은 <u>바이오환경국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 이내</u> ----- ----- <u>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, ----- ----- <u>환경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</u> -----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췌

【환경분쟁 조정법】

- 제7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.
- ② 지방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상임위원은 1명을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】

- 제4조(부지사)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“라 한다)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.
-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1.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 2.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·감독
 3.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·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
1.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·회의 참석
 2. 의회·정부·국회·정당·사회단체 등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
 3. 도정 홍보 및 언론기관 협조
 4. 경제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
 5.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·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3조(바이오환경국) 바이오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2.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

【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】

제13조(바이오환경국에 두는 과)

- ⑤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개정 2013. 4. 25>
47. 환경분쟁조정업무